

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 2024. 12. 12.

개 정 2026. 04. 1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4.16>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26.4.16>
②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에서 심의·결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독립이사 후보자군 구성 및 관리 <개정 2026.4.16>
2. 독립이사후보 선정 계획 수립 <개정 2026.4.16>
3. 독립이사후보 심사기준 결정 <개정 2026.4.16>
4. 독립이사후보 심사기준에 따른 독립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심사
<개정 2026.4.16>
5. 독립이사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<개정 2026.4.16>
6.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위원회 운영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규정 제16조에 의한다.

제6조(독립이사 후보자군 구성 및 관리 <개정 2026.4.16>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, 경영,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독립이사 후보자군을 구성한다. <개정 2026.4.16>

1.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뢰 등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물색한 자

2. 회사의 독립이사 중 상법상 연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<개정 2026.4.16>

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구성한 독립이사후보자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검증한다. <개정 2026.4.16>

제7조(독립이사후보 심사 및 선정 <개정 2026.4.16>) ① 위원회는 독립이사후보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독립이사 후보자군에서 심사대상자를 확정한다. <개정 2026.4.16>

② 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일정을 고려하여 독립이사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독립이사후보 심사대상자를 심사하고, 주주총회에 추천할 독립이사후보를 선정한다. <개정 2026.4.16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독립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아니되며, 해당 위원의 의결권은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6.4.16>

④ 위원회는 독립이사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·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) 6주 전까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<개정 2026.4.16>

부 칙(2024.12.12.)

이 규정은 2024. 12. 12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4.16.)

이 규정은 2026. 7. 23.부터 시행한다.